

1997. 10.

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충주시체육시설관리소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

충주시서울연락사무소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

총무위원회

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

1. 심사경과

조례안	제안일자	회부일자	상정일자	의결일자	제안설명자
충주시체육시설관리소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	'97. 10. 23	'97. 10. 24	'97. 10. 29	'97. 10. 29	시청과장
충주시서울연락사무소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	"	"	"	"	"

2. 제안설명요지

가. 충주시체육시설관리소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

1) 제안이유

- 체육시설관리소에서 관장해 온 중원체육공원 관리업무중 현지에서 처리 가능한 업무를 가급면에서 수행토록 하므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을 제고하기 위함.

2) 주요골자

- 중원체육공원의 시설관리와 운영은 체육시설관리소에서 관장토록 하고 중원체육 공원의 시설사용허가, 경비 및 청소, 사용료수납 등의 업무는 가급면에서 수행

나. 충주시서울연락사무소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

1) 제안이유

- 충주시서울연락사무소의 계속존치의 필요성에 따라 본 사업소설치조례 부칙 제2조에

규정한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존속기한을 삭제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.

2) 주요골자

- 충주시서울연락사무소설치조례(조례 제261호 1996. 4. 8.) 부칙 제2조를 삭제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충주시체육시설관리소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

- 시민의 체위 향상과 건전하고 명랑한 시민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근본적인 업무는 체육시설 관리소에서 관장하여야 하나
- 효율적인 체육공원 관리를 위해서는 체육공원과 인접한 읍·면·동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그에 따른 예산 및 인원조정등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나. 충주시서울연락사무소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

- '96년 7월 서울연락사무소 개소이후 현재까지 정보 및 자료수집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되며 현재까지 주요추진 실적으로는
 - 농림부에서 지원되는 생활용수지원 사업비 15억 3천만원의 국비보조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역할
 - 국가 예산편성상황 파악을 사전에 입수하여 이에 대처
 - '97년도 보통교부세 배정작업시 내부부 담당자와의 유대강화로 '96년도 대비 증액된 교부세를 교부 받을수 있도록 역할
 - 타시도, 시군 서울연락사무소와 상호정보 교환으로 우수사례는 시정에 반영할수 있는 여건등을 마련 하였음.
-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세한 질의 및 답변을 들으신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답변요지

가. 충주시체육시설관리소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

(질 의)

- 관리인력 보강 계획 및 가능여부?

■ 답변

- 운영하하면서 문제점 발생시 검토 하겠음.

나. 충주시서울연락사무소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

(질 의)

- 고문과 6급 공무원의 서울연락사무소 업무수행에 따른 관할 업무와 활동 영역은?

■ 답변

- 고문은 건교부국장 출신으로 중앙부처의 과장급 이상을 주로 담당하고 6급 공무원은 계장급 이하를 전담하고 있음.

(질 의)

- 서울연락사무소에서 추진한 실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소 폐지시 본청의 기획실 및 총무국에서는 사무소에서 추진해 온 업무를 할 수 없는가?

■ 답변

- 고급정보 입수 및 유대관계 등은 어렵다고 봄.

5. 수정안 요지

○별표 1

6. 심사결과

가. 충주시체육시설관리소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: 원안가결

나. 충주시서울연락사무소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: 수정의결

7. 부임

가. 충주시체육시설관리소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

나. 충주시서울연락사무소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

〔별표 1〕

■ 조례명 : 종주/서울연락사무소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

충주시서울연락사무소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한시기구에 관한 경과규정)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구의 존속기한은 199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<수정안 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부 칙	부 칙	제2조 (한시기구에 관한 경과규정) 이 조례 에 의하여 설치된 기구의 존속기한은 <u>199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</u> 제2조 (한시기구에 관한 경과규정) 이 조례 에 의하여 설치된 기구의 존속기한은 <u>199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</u>

충주시조례 제 호

충주시체육시설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주시체육시설관리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중 후단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.

(단 중원체육공원은 제2호, 제3호, 제5호를 제외한다)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다른 자치법규의 개정) 충주시면직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중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, 동조동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중원체육공원의 사용허가, 경비및청소, 사용료 수납 (단 가금면에 한함)

충주시조례 제 호

충주시서울연락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주시서울연락사무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충주시서울연락사무소설치조례 (조례제261호 1996년4월8일) 부칙.
제2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